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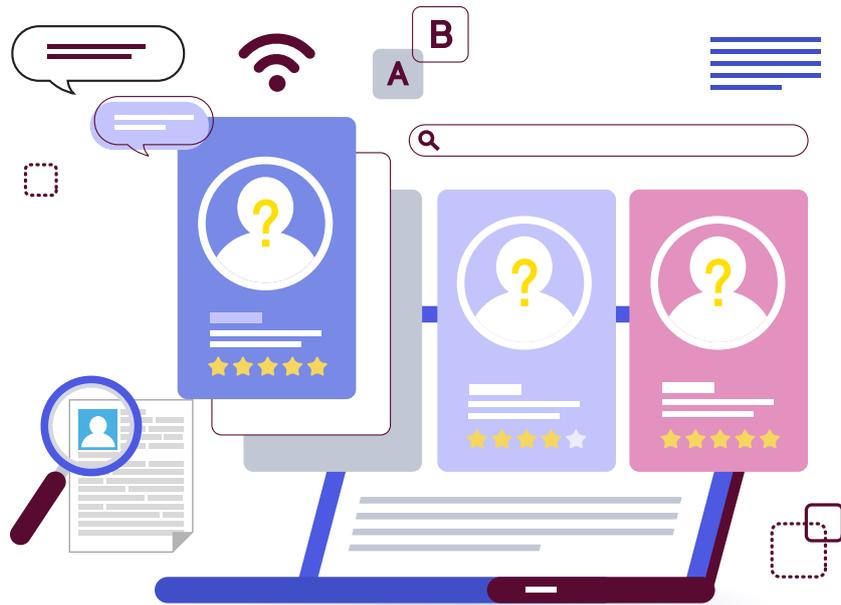




2024년 3월 1일 인사부터 시행

# 공립 중등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2023. 8.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JEOLLABUKDO GIMJE OFFICE OF EDUCATION



# 공립 중등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령 및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과 영양교사 인사관리 기준에 의거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인사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제외)과 공립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에게 적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및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

**제3조 (인사관리 지역) :** 본 교육지원청 관리 지역은 김제시로 한다. (단, 교감은 김제 ‘가’지역과 김제 ‘나’지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 제4조 (교사의 관내전보)

① 소속학교의 당해연도 타시·군 전출희망자수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2 40%이내(소수 점 절사) 이내에서 동일교(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근속자(단, 감축내신, 타시·도 전출내신자는 1/2 40%에서 제외됨)

② 관내 전보는 전입자 전보에 우선하여 전보한다.

③ 교과별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평정자료에 의하여 서열부를 작성 총 점수에 의하여 전보한다. 평점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현임교 지역 근속 가산점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1. 현임교 지역 근속 경력 가산점 : 1년당 1점(6개월 이상~1년미만인 경우 0.5점 부여)

#### 2. 삭제(2017.8.4.)

3. 교육경력은 15호봉 이하는 3점을 부여하고, 16호봉 이상은 1호봉당 0.08점을 가산하되 상한점은 5점으로 한다.(인사시행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4. 학급규모 가산점

5. 학급담임교사 경력

4. 포상

5. 지도상

6. 체육지도 실적 가산점

7. 영재교육 유공자

8. 노부모 봉양자

- 9. 순직교원 배우자
  - 10. 자격증 소지자
  - 11. 순회근무교사
  - 12. 학급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가산점
  - 13. 장애인 부양교사 가산점
  - 14. 3자녀 이상(가장 어린 자녀가 만19세 미만까지)을 둔 교사
- ④ 교과별 전보서열 평정자료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별 근속경력 가산점<개정 2018.8.16.>

[전북 중등교원 인사 관리기준 별표 4-1] (2019.3.1. 이후 적용)

| 구분      | 연가산점  | 학교명 | 연가산점  |
|---------|-------|-----|-------|
| 한 들 중   | 1.483 | 용지중 | 1.391 |
| 김 제 중   | 1.483 | 봉남중 | 1.345 |
| 김제중앙중   | 1.506 | 금구중 | 1.230 |
| 김제교육지원청 | 1.506 | 청하중 | 1.782 |

2. 삭제(2017.8.4.)

3. 교육경력은 15호봉 이하는 3점을 부여하고, 16호봉 이상은 1호봉당 0.08점을 가산하  
 되 상한점은 5점으로 한다.(인사시행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개정 2023.7.21.>

| 구분             | 점수       |
|----------------|----------|
| 근카 1호 이상       | 5.0      |
| 36호봉 ~ 40호봉 이상 | 4.5 5.0  |
| 31호봉 ~ 35호봉    | 4.0 4.92 |
| 24호봉 ~ 30호봉 :  | 3.5 :    |
| 18호봉 ~ 23호봉    | 3 3.16   |
| 12호봉 ~ 17호봉    | 2.5 3.08 |
| 11호봉 이하        | 2 3.0    |

| 구분      | 점수   |
|---------|------|
| 40호봉 이상 | 5.00 |
| 39호봉    | 4.92 |
| :       | :    |
| 17호봉    | 3.16 |
| 16호봉    | 3.08 |
| 15호봉 이하 | 3.0  |

4. 포상 가산점(동일교 5년 이내 최고 훈격 1회)<개정 2020.7.28.>

지역별 근속경력 가산점 인정 기간 동안 수상한 것 중 최상위 포상 하나만 인정한다.

| 훈격 | 훈장·포장<br>모범공무원 | 대통령   | 국무총<br>리 | 장관·총장 | 교육감·학장 | 교육장   | 비고 |
|----|----------------|-------|----------|-------|--------|-------|----|
| 점수 | 0.75           | 0.625 | 0.5      | 0.375 | 0.25   | 0.125 |    |

5. 지도상 가산점<개정 2020.7.28.>

지역별 근속경력 가산점 인정 기간 중 유리한 것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전북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제18조 제4항 제3호 ‘마’목 (1)에 준함)

| 구분 | 가산점  | 1   | 0.75 | 0.5 | 0.25 | 0.125 |
|----|------|-----|------|-----|------|-------|
|    | 전국대회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    | 도대회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단, 상장에 등급의 표시가 없을 때는 3등급으로 인정함)

6. 체육(무용포함)교사 지도 실적 가산점<개정 2020.7.28.>

지역별 근속경력 가산점 인정 기간 중의 실적으로 한다.

| 등위 | 전 국 체 전<br>전국소년체전 | 전국규모대회<br>(체육·무용) | 도단위대회<br>(체육·무용) |
|----|-------------------|-------------------|------------------|
| 1  | 7.5               | 2.5               | 1.5              |
| 2  | 5                 | 2                 | 1                |
| 3  | 2.5               | 1.5               | 0.5              |

7. 영재교육 등 유공교원 가산점<개정 2020.7.28.>

(전북 중등교원인사기준 제18조 제4항 제3호 ‘아’목에 준함)

지역별 근속경력 가산점 인정 기간 중의 실적으로 한다.

| 등급     | 규모     | 전국단위 | 도단위 | 비고  |
|--------|--------|------|-----|-----|
|        | 1등(금상) |      | 2.5 | 1.5 |
| 2등(은상) |        | 2    | 1   |     |
| 3등(동상) |        | 1.5  | 0.5 |     |

8. 노부모 및 조부모 봉양교사 가산점(70세 이상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봉양 시 전보 우대 가산점 1점을 부여함. 단, 장애인 부양 교사 가산점과의 중복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9. 순직교원의 배우자 가산점(순직교원의 배우자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전보 우대 가산점 2점을 부여함)

10.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전북 중등교원인사기준 제18조 제4항 제3호 ‘바’목에 준함)

| 구 분   | 점 수  |
|---|------|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해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서비스계 기술종목 1단 이상 및 1급 자격증 소지자 | 0.75 |
|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와 서비스계 기술종목 2급, 3급 자격증 소지자                      | 0.5  |

11. 순회(겸임) 근무교사 가산점은 순회 근무 1월에 0.09점씩을 부여한다. 단, 지역별 근속경력 가산점 인정 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담임교사 가산점과 중복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이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순회교사는 1월에 0.10점씩 부여한다.

12. 학급담임교사는 1월에 0.09점을 부여하고, 보직교사, 수석교사 가산점은 1월에 0.04점씩 부여한다. 단, 지역별 근속경력 가산점 인정 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순회(겸임)근무교사, 수석교사 가산점은 중복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개정 2023.7.21.>

13. 장애인 부양교사 가산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2년(비속은 연한에 관계없음) 이상 계속 직접 부양하고 있는 교사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전보우대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노부모 봉양교사 가산점과의 중복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14. 3자녀 이상(가장 어린 자녀가 만 19세 미만까지 적용)을 둔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보우대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15. 학교 규모(특수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기준 월단위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여기간은 지역별 연간 근속경력 가산점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7.28.>

| 구분            | 점수(월) |
|---------------|-------|
| 18학급이상 ~ 24학급 | 0.064 |
| 9학급~17학급      | 0.043 |
| 4학급~8학급       | 0.021 |

- ⑤ 동일교에서 근무하는 부부교원은 동일지역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 ⑥ 여학교 특수학급에 여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특수교사 임지배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남녀 학생성비를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 ⑦ 영양교사의 관내 전보는 유·초·중·고 학교급을 통합하여 임지를 배정하며, 배정 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서열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한다. 단, 평정점이 동점으로 서열

이 같은 경우 제4조③항을 따른다.〈신설 2020.8.26.〉〈개정 2021.8.00.〉

**제5조 (순회(겸임)교사제 운영)** 전공교과의 순회지도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회교사를 겸임 발령할 수 있다.

① 교과별 순회교사 감축 순위는 다음과 같다(단, 감축을 원하는 교사가 있을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제1순위 : 먼저 전입해 온 교사

제2순위 : 경력이 적은 교사

② 순회(겸임)교사는 1교에 2명을 초과하여 배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제6조 (교감의 관내 전보)** : 교감의 관내 전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①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한 자

② 경합자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제3항에 의한다.

**제7조 (전입교원 임지 지정)** : 전입한 교사의 임지는 경합자가 있을 경우 희망을 받아 전보서열부순으로 지정하되,

제1순위: 관내 감축전보 교사

제2순위: 관내 일반전보 교사

제3순위: 타 시·군에서 순환전보로 전입한 교사

제4순위: 타 시·군에서 감축으로 전입한 교사

제5순위: 일반전입자

제6순위: 복직자

제7순위: 타· 시도 교류 전입자

제8순위: 신규교사 순으로 임지를 지정한다.

① 각 학교에 배정된 교사 정원에서 신규교사 및 정원내기간제교원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23.7.21.〉

**제8조 (전보 서열의 유효기간)** : 전보 서열부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 부 칙 -----

제10조 (시행일) : 이 규정은 1994학년도 학년말 인사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폐지) : 1994학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원인사관리기준은 1995.2.28일부로 폐지한다.

제12조 (전보지역 분리) : 관리상 전보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급지 | 김제 '가'          | 김제 '나'   | 비고 |
|----|-----------------|----------|----|
| 2  | 김제중, 김제중앙중, 한들중 | 금구중      |    |
| 3  |                 | 용지중, 봉남중 |    |
| 4  |                 | 청하중      |    |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기준은 1997.3.1 교원인사부터 실시한다.

제2조 (폐기) : 1994학년도 학년말부터 실시한 김제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은 1997.2.28일부로 폐기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1999.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④항 교과별 경합이 있을 경우 서열부 작성의 평정자료에 9. 연구시범학교 수혜자.  
10. 자격증 소지자 11. 순회근무교사 가산점 신설 부여

③ 제5조 총정원제 및 순회교사제 운영 신설

④ 제8조 기간제 교원으로 명칭 변경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0.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1999.3.1부터 시행한 전라북도김제교육청 '중학교 교원인사관리기준'은 2000.2.28일부로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1.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2000.3.1부터 시행한 전라북도김제교육청 '중학교 교원인사관리기준'은 2001.2.28일부로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5.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② (수정)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인사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4조 ①항 동일교(교육청)에서 1년 이상
- ③ (폐지) 제4조 ②항
- ④ (신설) 제4조 ④항 교과별 경합이 있을 경우 서열부 작성의 평정 자료에 6. 체육지도 실적 가산점. ⑩항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에 문서실무사 및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신설
- ⑤ (폐지) 20013.1부터 시행한 전라북도김제교육청 ‘중학교 교원인사관리기준’은 2005.2.28부로 폐지한다.

----- 부 칙 -----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6.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② (수정) 제4조 ④항 1목의 현임교 지역 근속경력 가산점은 학교별 근속경력 가산점으로 수정.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별표4 학교별 근속경력 가산점 조건표 및 급지일람표의 표로 대체
- ③ (수정) 제4조 ④항 2목의 근무성적 가산점 수우미양 4단계평가를 수우미 3단계 평가로 수정
- ④ (수정) 제4조 ④항 5목의 연구실적 및 지도상 가산점 항목의 제④항 제3호 ‘바’목에 준함을 제④항 제3호 ‘마’목 (1)에 준함으로 수정
- ⑤ (수정) 제4조 ④항 5목의 표를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제18조 ④항 마목의 (1)지도상의 가산점 표로 대체하고, ‘단, 상장에 등급의 표시가 없을 때는 3등급으로 인정함’ 문구 삽입
- ⑥ (수정) 제4조 ④항 6목에 ‘단, 최근 5년 이내 당해학교 6월이상 지도 실적에 한함’ 문구 삽입
- ⑦ (수정) 제4조 ④항 7목의 ‘차’목에 준함을 ‘아’목에 준함으로 수정
- ⑧ (수정) 제4조 ④항 8목에 ‘단, 장애인 부양교사 가산점과의 중복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문구 삽입
- ⑨ (수정) 제4조 ④항 10목의 ‘아’목에 준함을 ‘바’목에 준함으로 수정
- ⑩ (수정) 제4조 ④항 11목의 ‘최근 6년까지 인정한다’를 ‘최근 5년까지 인정한다’로 수정하고 ‘단, 담임교사 가산점과 중복 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구 삽입
- ⑪ (수정) 제4조 ④항 12목의 ‘단, 현임교 3년까지만 인정한다’를 ‘단, 현임교 3년까지만 인정하되, 순회교사 가산점과 중복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수정
- ⑫ (수정) 제6조 ②항 ‘경합자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제4항에 의한다’를 ‘경합자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제3항에 의한다’로 수정
- ⑬ (수정) 제7조 ‘전입한 교사의 임지는 관내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 가급적 본인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를 ‘전입한 교사의 임지는 경합자가 있을 경우 ①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적합하게 배정한다. ② 희망을 받아 4조 ③항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로 수정
- ⑭ (폐지) 제8조 (기간제 교원 임용)은 2006.2.28일부로 폐지함.
- ⑮ (수정) ‘제9조 (전보 서열의 유효기간)’를 ‘제8조 (전보 서열의 유효기간)’로 수정함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7.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8.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9.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9.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② (수정) 전라북도교육규칙 제637호(2010.9.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을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

----- 부 칙 -----

① (시행일) : 이 규정은 2010학년도 학년말 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9.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인사관리 지역분리)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교사의 관내전보) 제4항 제11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순회교사 가산점은 2014년 3월 1일 이후 경력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4조(관내전보 대상)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폐지) 제4조 ③항 근무성적이 높은 자 ③항 2 근무성적, ④항의 2 근무성적 가산점

(신설) 제4조 ⑤항 ‘동일교에서 근무하는 부부교원은 동일지역 타 학교로 우선 전보 한다’

⑥항 ‘여학교 특수학급에 여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수정) ‘김제여자중학교’ 교명 변경 안내(김제여자중학교-1027(2022.2.10.)에 따라

김제여중을 한들중으로 변경함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3.1 교원인사부터 시행한다.

# 김제 중등교원(영양교사) 인사관리 신·구조문 대비표(2024.3.1.)

| 순           | 조·항·명                 | 현행   | 개정안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제4조<br>(교사의 관내전보)     | <p>① 소속학교의 당해연도 타시·군 전출희망자수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2-(소수점 절사) 이내에서 동일교(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근무자(단, 감축내신, 타시·도 전출내신자는 1/2에서 제외됨)</p>  | <p>① 소속학교의 당해연도 타시·군 전출희망자수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40%이내(소수점 절사) 이내에서 동일교(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근무자(단, 감축내신, 타시·도 전출내신자는 -40%에서 제외됨)</p> | <p>‘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변경에 따른<br/>(전보 대상 인원 축소)</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제4조④항 3<br>(교사의 관내전보) | <p>④ 교과별 정보서열 평정자료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3. 교육경력 가산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근가 1호 이상</td> <td>5.0</td> </tr> <tr> <td>36호봉 ~ 40호봉</td> <td>4.5</td> </tr> <tr> <td>31호봉 ~ 35호봉</td> <td>4.0</td> </tr> <tr> <td>24호봉 ~ 30호봉</td> <td>3.5</td> </tr> <tr> <td>18호봉 ~ 23호봉</td> <td>3.0</td> </tr> <tr> <td>12호봉 ~ 17호봉</td> <td>2.5</td> </tr> <tr> <td>11호봉 이하</td> <td>2.0</td> </tr> </tbody> </table> | 구분  | 점수   | 근가 1호 이상 | 5.0 | 36호봉 ~ 40호봉 | 4.5 | 31호봉 ~ 35호봉 | 4.0 | 24호봉 ~ 30호봉 | 3.5 | 18호봉 ~ 23호봉 | 3.0 | 12호봉 ~ 17호봉 | 2.5 | 11호봉 이하 | 2.0 | <p>3. 교육경력은 15호봉 이하는 3점을 부여하고, 16호봉 이상은 1호봉당 0.08점을 가산하되 상한점은 5점으로 한다.<br/>(인사시행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40호봉 이상</td> <td>5.00</td> </tr> <tr> <td>39호봉</td> <td>4.92</td> </tr> <tr> <td>⋮</td> <td>⋮</td> </tr> <tr> <td>17호봉</td> <td>3.16</td> </tr> <tr> <td>16호봉</td> <td>3.08</td> </tr> <tr> <td>15호봉 이하</td> <td>3.0</td> </tr> </tbody> </table> | 구분 | 점수 | 40호봉 이상 | 5.00 | 39호봉 | 4.92 | ⋮ | ⋮ | 17호봉 | 3.16 | 16호봉 | 3.08 | 15호봉 이하 | 3.0 | <p>‘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변경에 따른<br/>(급간을 폐지하고 호봉별 가산점 차이를 둠)</p> |
| 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가 1호 이상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호봉 ~ 40호봉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호봉 ~ 35호봉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호봉 ~ 30호봉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호봉 ~ 23호봉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호봉 ~ 17호봉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호봉 이하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호봉 이상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호봉        | 4.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호봉        | 3.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호봉        | 3.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호봉 이하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 | 조·항·명                  | 현행   | 개정안  | 사유  |
|---|------------------------|--|--|---|
| 3 | 제4조④항 12<br>(교사의 관내전보) | 12. 학급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석교사 가산점은 1월에 0.04점씩 부여한다. 단, ----- | 12. 학급담임교사는 1월에 0.09점을 부여하고, 보직교사, 수석교사 가산점은 1월에 0.04점씩 부여한다. 단, -----                               | '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1월에 0.04에서 0.09로<br>상향조정 |
| 4 | 제7조<br>(전입교원임자리정)      | <신설>   | 제8순위: 신규교사 순.....<br>① 각 학교에 배정된 교사 정원에서 신규교사 및 정원내기간제교원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23.7.21> | 신규교사 및<br>정원내기간제 교사의<br>학교별 편중 해소           |





